

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[별지 제6호의2서식]

소상공인들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[] ① 신고서 [] ②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
	주소(주된 사무소)	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-Mail	
	홈페이지주소		
①신고시	사업의 종류		
②변경시	주요 변경사항	기 존 변 경	
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①신고시	1.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2.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1부.
	②변경시	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①신고시	법인등기사항증명서 [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)]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	②변경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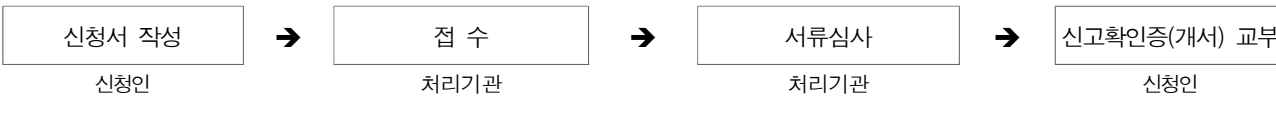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